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. 11. 5 선고 2024가단50412 판결 [(채권자 대위권에 의한) 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0. 22.

판 결 선 고 2024. 11. 5.

주 문

-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택 39.48㎡를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채대원

별지